

주요 정책토론

본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998년 12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던 「장애인 인권현장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임.

장애인 인권현장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

일 시: 1998. 12. 21. (월) 14:00~17:00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좌 장: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주 제: 장애인 인권현장 제정의 배경과 그 철학

발 표: 김성재 장애인인권현장제정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법 률: 박주현 민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복지정책: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 교 육: 윤점룡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 직 업: 권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여 성: 채은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복지시설: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문 화: 박인기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 사회환경: 박을중 한국복지산업연구소 소장

• 가 족: 이청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 개최배경

- 정부는 지난 12월 9일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하였음.
- 장애인인권헌장은 '천부인권사상'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철학으로 하여 장애인이 존엄하고 평등한 국민과 시민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임을 밝히는 것임.
- 보편적인 인권 차원을 넘어 장애인은 '특수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법과 제도 및 정책들이 이 헌장에 기초해서 재정리되고 구체화되어야 함. 본 대토론회는 장애인인권헌장의 조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의 의의를 밝힌 기초발제와 법률, 교육, 직업 등 9개 분야의 주제별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음.

☐ 법률분야

- 기존 장애인관련법에는 장애수당, 장애급부, 장애예방과 조기발견, 재활치료 등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복지수혜자인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을 통합하여 장애인종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복지정책분야

- 현 시점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소득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보편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라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함.
- 정부의 복지역할과 더불어 민간의 복지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특수교육분야

- 장애인 관련 제반 교육정책은 통합교육의 방향에서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 전달체계 및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개혁해야 함.
- 영·유아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조기 통합교육을 추진하며, 사설 조기교육실을 인가제로 전환해야 함.
- 특수학교의 위상 재정립과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지원체계망의 구축이 시급함.

☐ 직업재활분야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직업진로지도,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체계를 법에 명시하고, 취업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와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특정 직종에 장애인만을 고용토록 하는 지정고용제, 고용촉진기금의 직업재활기금화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함.

☐ 여성장애인분야

- 장애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빈곤의 고통까지 감수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여성장애인 참여 할당제, 여성장애인 민간단체 지원 등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가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가정폭력 방지법의 관리감독, 여성장애인 전문가 양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개발과 직업 및 교육기회 확대방안 등이 필요함.

☐ 복지시설분야

-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현실성 있는 시설운영지침 마련,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위법시의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등 법에 관련규정을 명시해야 함.
-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현행 수용인원에 비례하는 방식에서 복지시설의 개방화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설의 환경변화를 유도하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설운영의 질을 제고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시설의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분야

- 전체 장애인이 문화생활과 사회참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

가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장애인이 문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보조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양성·파견·관리사업의 조직 및 수행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회환경분야

-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 제도적 장벽, 문화·정보의 장벽, 의식의 장벽 등 네 가지 사회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없는 사회 (Barrier Free Society)’를 조성해야 함.
- 모든 공공시설, 교통시설, 대중이용시설과 시설내의 설비구조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또한 각종 자격제도, 대학 등의 입시제도, 취직·임용시험 등에 있어서 점자활용, 시각장애인의 맹인견 금지구역 해제 등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야 함.

□ 가족분야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아를 가정내에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고, 재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
- 생활권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재한 지역에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소규모 장애인주간보호소를 설치하는 구단위 사업을 실시하며,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는 개방시설을 운영하도록 함.